

#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1
----------	-----

제출년월일 : 1997.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물가대책위원회를 실질적이고 실무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책위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지사에서 공업경제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직제 개편에 의한 국·과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에서 공업경제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위원장 제도는 폐지함
- 직제 개편에 의한 국·과의 명칭을 변경

## 의안전문 : 별 첨

## 근거법령

- 충청북도 직제규칙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 ③ 위원은 충청북도의 보건환경국장, 농정국장, 공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청주지방검찰청경제담당검사, 충북지방경찰청수사과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제2항중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을 “위원장이 지명한”으로 하고 제9조중 “부지사”를 “공업경제국장”으로 하며, 제10조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